

제 1302 호
1986. 7. 26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보부
 편집인 : 서울특별시청 영보부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1-6111-3
 전화 : 735-3337

신 길	공 보 관	김진자	공보계장
접수일시	1986. 7. 26	우도계장	
처리부	영보부		

시 보

차 례

- ◎ 고 시
 - 제 494 호 : 용마자연공원조성사업 일부 변경 시행허가 2
 - 제 497 호 :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 7
 - 제 507 호 : 골재운반을위한선박운항허가 8
 - 제 521 호 : 사료성분등록 (등록 . 변경 . 취소) 8
- ◎ 공 고
 - 제 412 호 : 비료생산업허가사항변경 및 품목추가 생산허가 12
- ◎ 사 령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94 호

용마자연공원조성사업 일부 변경시행허가

- 1. 서울시 고시 제 225 호('83.4.18)로 공원조성 시행허가 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 467 호('86.7.8)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용마자연공원 조성계획 망우지구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6 조와, 동법시행령 제 2 조 및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제 25 조 등 관짜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사업계획 일부 변경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7.26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동대문구 망우동 산 69-1 일대
-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용마자연공원 조성사업 일부 위치변경 시행
- 다. 변경내역 : 별 첨 (도시계획시설 용마자연공원 조성계획, 일부 변경 결정조서)
-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동 389-2
평산신씨 전침공파 총중 대표 신홍균
- 마. 사업척수 및 준공예정일
착 공 : 1986. 7.
준공예정일 : 1986. 12. 31
- 바. 위치도 및 평면도 : 별 첨

용마자연공원 조성사업 일부 변경시행허가증				
사 업 자	성 명	평산신씨 전철 공파 중증 대표 신 홍 균	주민등록번호	260420-1222410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동 389번지 2호		
공원의 명칭 및사업시행지	용마자연공원(망우시설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동 산 69-1 일대			
사업의 종류 및 명 칭	용마자연공원 조성사업 일부 위치변경시행			
사업시행면적	161,152 ㎡			
시 설 규 모	휴양시설 142 ㎡, 운동시설 18,773.5 ㎡, 편익시설 8,292 ㎡, 관리시설 750 ㎡, 유희시설 4,522 ㎡, 조경시설 128,672.5 ㎡			
사업의 착수및 준공예정년월일	착 공	1986.7.		
	준 공	1986.12.31		
사 업 계 획	별 칩			
조 건	별 칩			
<p>도시공원법 제 6 조 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 조 및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법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허가함.</p> <p style="text-align: right;">1986. 7.</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허 가 조 건

1. 본 사업은 사업신청서의 설계도서 및 일반토목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다음 조건을 준함은 물론 도시계획법에 정하는 질차나 명령 또는 이에 관한 처분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본사업 시공상 특수기술을 요하는 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감리를 받아 시공하고 공시에는 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서 및 준공검사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집행이 있어 토사유출 낙반 등으로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본 공사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수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4. 건축물 건축등 과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시는 별도 허가를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본사업 시행의 착수 및 준공에 있어서 별도로 지적법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시에는 구청장의 준공검사서를 받고 지적 협회에서 측량한 경계감정도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6. 하수도 시설은 하수표준도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하수도 관문은 흙관으로 시공하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 하수유입 유출로 인하여 사유 재산에 피해

- 가 있을시 시행자가 책임지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토목과에 지도 감독을 받아 시행, 그 지역 일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절개지 나적에는 조경계획에 의거 메블입 및 수목식재등 조경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본공사는 전문건설업면허 소지자라야 한다.
9. 이공사는 중도에 중단 또는 미시공하거나 변경시공하는등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기간의 연장, 기타 허가조건과 행정지시에 불응할시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0. 특히 본지역은 학교주택과 인접된 곳으로 공원조성(유희시설등)에 따른 주변교육, 환경,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소음방지 대책, 차막, 차폐식재, 풍기문란 대책등 시행자 책임하에 인근 학교와 지역주민에 사전협의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본허가 조건과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시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2. 본 사업은 도시공원법 및 도시공원조례의 규정에 준수하여 시행한다.
13. 위 조건과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본허가를 취소할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 78조 규정 및 도시공원법 제 32조에 의거 조치하는 등시 당시의 지시에 따라 자기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용마차공원)조성계획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번호	지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휴양시설	노인정	2	망우동산 69-1	142	1동 120	142	1동 120 (연와조)	이런이늘이타의 이용자층가로 위치변경
운동시설	수영장	A		8,643				완공
	경구장	H		9,530.5 (18면)				완공
	공도장	9	"	600	1동 64	600	1동 64 (조각조)	주차상차의 변경 으로 변경 설치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1		360	1동 178.2			완공
	창고	8		150	1동 72			완공
	급수시설	11		225	1동			"
	펌프실	11-1			184.84			
	매표소	7	"	15	1동 6	15	1동 6 (목조)	로올러스격이트장 삭제로 위치를 변경(주차장 순 전기사 대기실로 사용)
조경시설	분수대	1-3	"	85		85		유희시설 위치 변경으로 시설 치 변경
	누자대,기타	K		128,407.5		128,587.5		변경
편의시설	주차장(A)	F		1,825				완공
	"(B)	G		900				"
	발의실 (정구장)	10		240	1동 117			"
	휴게실	3		900	1동 141			"

구분	시설명	번호	지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일반	식당	4		260	1동 178.5			완공
	매점	6		42	1동 20.88			"
	탈의보관소 (수영장)	5		700	2동 400			"
	관장	D		300				"
	주차장	B		660		660		현장위치에 문 종요소가 있어 위치변경
	화장실	1-7		45	1동 43.5	45	1동 43.5 (조적조)	유회시설의 화장 실로서 시설물 변경으로 위치 변경
	도로	J		2,000		1,820		수영장 탈의실 에서 궁도장까 지의 폭 4 m도 로 45 m를 현장 여건상 설치 불 가 삭제
유회	어린이놀이터	E	광우동69-1	1,575				완공
	모험놀이시설	I	"	1,500				"
	친용열차	1-1	"	600		600		조경시설물을 최 대한 보존하고 지형 변경을 최 소로 하기 위 하여 배치변경
	관람차	1-2	"	133		133		
	회전목마	1-4	"	124		124		
	회전비행기	1-5	"	113		113		
	회전그네	1-6	"	113		113		
	다람쥐틀	1-8	"	114		114		
	요술의집	1-9	"	150	144	150	144	
	회전보트	1-10	"	100		100		
계				161,152	1,689.92	161,152	1,689.92	

<p>◎ 서울특별시고시제 497 호</p> <p>도시공원시설 사용료결정</p> <p>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 6 조 별</p> <p>표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시설 사</p>	<p>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86. 7. 26.</p> <p>서울특별시장</p>
--	---

구 분	시설명	사용구분	금 액	비 고
용마자연 공원내 유희시설	청용열차	어 른 1 회	1,100	
		청소년 1 회	900	
		어린이 1 회	600	
	관 랑 차	어 른 1 회	600	
		청소년 1 회	400	
		어린이 1 회	300	
	전자전투기	어 른 1 회	500	
		청소년 1 회	350	
		어린이 1 회	200	
	다 랑위동	어 른 1 회	400	
		청소년 1 회	300	
		어린이 1 회	200	
	회전보트	어 른 1 회	400	
		청소년 1 회	300	
		어린이 1 회	200	
	회전그네	어 른 1 회	400	
		청소년 1 회	300	
		어린이 1 회	200	
	회전목마	어 른 1 회	300	
		청소년 1 회	200	
		어린이 1 회	200	
	도깨비집	어 른 1 회	300	
		청소년 1 회	200	
		어린이 1 회	200	

<p>◎ 서울특별시고시제 507 호</p> <p>골재운반을 위한 선박운항 허가</p> <p>한강, 구역 내에서 채취한 골재운반을 위하여,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p> <p>1986. 7. 26</p> <p>서울특별시</p>		<p>의 운항을 허가하고 동법제 25 조 제 4 항 및 동법 시행령제 22 조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골재운반을 위한 선박운항 허가내용</p>								
적용수허가자	적용위치	적용목적	적용내역					
동아건설산업(주) 입원수 (한강종합개발 1공구 구역)	마포구 상암동난지도 앞 한강일원	골재운반	예인선 3대 바지선 5대					
<p>○ 적용허가기간: '86. 7 - '86. 8.31. * 허가기간은 한강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p>								
<p>◎ 서울특별시고시제 521 호</p> <p>사료성분등록(등록, 변경, 취소)</p> <p>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 등록(등록, 변경,</p> <p>1986. 7.26.</p> <p>서울특별시</p>		<p>취소)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고시한다. 별첨: 고시내역 1부</p>						
<p>○ 공장명: 두산곡산(주) ○ 소재지: 영등포구 문래동 5 가 15 ○ 대표자: 이 재 언 신 규</p>								
등록번호	사료명칭 및 용도	성분량 (%)						비고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13-7	육성 비육우 사료(이유 ~ 300kg) 비육우용	이상 14	이상 2.5	이상 0.6	이상 0.4	이하 8	이하 10	
13-8	주문육성돈사료·육성돈용	14.3	2.7	0.6	0.4	6	8	기간 86.5.14 -87.5.13 (1년간)

○ 위 소									
등록 번호	사 료 명 칭 및 용 도	성 분 량 (%)						비고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13-91	큰소비육(I)220kg~300kg 육우비육용	이상 15	이상 2.5	이상 0.5	이상 0.3	이하 8	이하 10		
○ 번 경									
등록 번호	변 경 사 항 (사 료 명 칭 및 용 도)		성 분 량 (%)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조단 백질	조 지방	칼 슘	인	조 섬유	조 회분	
13-2	양계용 산란중기 사료 (백색지및유색계 41-60주)	산란중기사료산란계용 (백색지및유색계41-60주)	이상 14.5	이상 2.5	이상 0.5	이상 0.3	이하 6	이하 14.5	
13-3	특수갓난돼지사료 (갓난돼지인공유)	특수갓난돼지사료 (4주이하)	21	3	0.6	0.4	4	8	
13-4	특수젖먹이돼지사료 (젖먹이용 교효율)	특수젖먹이 돼지사료 (4~6주)	18	3	0.6	0.4	5.5	8	
13-5	특수육성돈 사료 (육성돈 교효율)	특수육성돈 사료 (2~4개월)	15	3	0.6	0.4	6	8	
13-6	착유사료(IV) (비유당 20kg이상)	착유사료(IV), 착유우용 (비유당 20kg이상)	19	2.5	0.7	0.5	9	10	
13-80	양계용 특수사료 (갓난병아리, 부화 4주령 이하)	특수어린 병아리사료 (갓난병아리, 부화 1주령이하)	22.5	3	0.7	0.6	5	7	
13-88	갓난돼지사료	갓난돼지사료 (4주이하)	20	2	0.6	0.4	4	8	
13-89	양계용주문산란초기	주문산란초기사료 (산란개시~40주)	16	2.5	3	0.5	6	14.5 ~86 ~87 4.14	
13-90	축우용, 착유 3호	착유사료(III) (비유당 16~25kg)	17	2.5	0.7	0.5	9	10	
13-93	축우용, 착유 2호	착유사료(II) (비유당 5kg이하)	15	2.5	0.7	0.5	10	10	
13-94	축우용, 큰송아지	큰송아지 사료 (7개월~분만전)	13	2.5	0.6	0.4	10	10	

등록 번호	변경 사항 (사료명칭 및 용도)		성 분 량 (%)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조단 백질	조 지방	칼슘	인	조 성분 회분	
13-95	축우용 중중아지	중중아지 사료 (4~6개월)	16	2.5	0.60	0.4	9	10
13-96	어린중아지	어린중아지 사료 (3개월 이하)	19	2.5	0.60	0.4	6	9
13-97	양돈용, 종돈	종돈사료	13	2.5	0.50	0.4	10	10
13-98	포유돈	포유돈사료	15	2.5	0.50	0.40	10	10
13-100	양돈용, 비육돈후기	비육돈후기	14	2.5	0.50	0.4	7	9
13-101	양돈용, 비육돈전기	비육돈전기 (초기용)	14	2.5	0.60	0.4	6	8
13-102	양돈용, 육성돈	육성돈사료 (2~4개월)	15	2.5	0.60	0.4	6	8
13-103	양돈용, 젖먹이돼지	젖먹이돼지사료 (4~6주)	18	2.5	0.60	0.4	5.5	8
13-104	양계용, 육계후기 I	육계후기사료 I (5~8주)	17.5	3	0.70	0.5	6	8
13-105	양계용, 육계전기	육계전기사료 (0~3주)	19.5	3	0.70	0.5	6	8
13-106	양계용, 종계	종계사료 (산란계 또는 육계용)	15.5	2.5	3	0.5	7	14.5
13-107	양계용, 산란초기	산란초기사료 (산란개시~40주)	15	2.5	3	0.5	6	14.5
13-108	양계용, 큰병아리	큰병아리 사료 (13주~산란개시전)	1	2.5	0.40	0.4	7.5	9
13-109	양계용, 중병아리	중병아리 사료 (7~12주)	15.5	2.5	0.70	0.5	6	9
13-110	양계용, 어린병아리	어린병아리 사료 (6주이하)	13.5	2.5	0.70	0.5	6	8
13-1	육우비육용, 종모우사료 (고기소종모우용)	비육우용 목수콘소 비육사료 (한우비육용)	11	2.5	0.50	0.3	10	10
13-92	육우비육용, 콘소비육 II (300kg~출하시)	비육우용 콘소비육사료 II (300kg~400kg)	12	2.5	0.50	0.3	10	10
13-113	육우비육용, 목수사료 (한우비육용)	비육우용 콘소비육사료 II (400kg이상)	11	2.5	0.50	0.3	10	10

- 공장명 : 서울미원㈜
- 소재지 : 영등포구 대림동 629
- 대표자 : 홍 연 석
- 신 규

등록 번호	사 료 명 칭 및 용 도	성 분 량 (%)						비 고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피분	
13-39	특수 육계전기사료 (0~2주)	이상 22	이상 2.5	이상 0.7	이상 0.5	이하 6	이하 8	
13-40	비육돈 전기사료 (초기용)	14.5	2	0.5	0.4	7	9	
13-41	특수송아지사료 (스트레스기간)	12.5	1.5	0.5	0.3	20	12	
13-42	특수육성우사료 (생체중 100~200kg)	12	1.5	0.5	0.3	20	12	
13-43	특수육성비육사료 (생체중 200~300kg)	11	1.5	0.5	0.3	20	12	
13-44	특수근소비육사료(I) (생체중 300kg~출하시)	10	1.5	0.5	0.3	15	12	
13-45	특수착유(Ⅳ) 사료 (고능력 우용)	18	2	0.7	0.5	9	10	

○ 변 경

등록 번호	변 경 사 항 (사료명칭및용도)		성 분 량 (%)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피분	
13-3	양돈용특수사료	특수갓난돼지사료 (조기이용용전기)	21	4	0.7	0.5	5.5	8	
13-4	낙농용특수사료	특수착유 4호(영양분보강용)	20	0.1	0.4	0.2	1	13	
13-6	큰병아리사료 2호	특수큰병아리사료 (18주~산란5%)	15	2.5	0.7	0.5	6	15	
13-17	큰송아지사료 (11개월~분만전 15일)	큰송아지사료 (7개월~분만전)	13	2	0.6	0.4	10	10	
13-24	중송아지사료 (4~10개월)	중송아지사료 (4~6개월)	15	2	0.4	0.3	9	10	
13-31	산란초기 A 사료	특수산란초기사료 (산란전기간용)	15	2.5	3	0.5	6.5	13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412 호**

비료생산업허가사항변경및 품목추가
생산허가사항공고

비료관리법 제 11조제 1항,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3조 동시행령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
허가사항변경 및 품목추가 생산허가
하고 동법시행령 제 7조제 1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6.7.26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 제 1 - 2 호
2. 성 명 : 손 영 희
3. 주 소 : 서울강남구반포동 1245
반포(아) 95-107
4. 제조장소재지 : 서울강서구가양동 92
5. 상 호 : 제일제당㈜
6. 비료의종류 및 품목 : 별첨
7. 보증성분 및 기타의규격 : 별첨
8. 생산능력 : 별첨
9. 허가년월일 : 1986.7.21

비료생산업허가사항변경허가내역

비료의종류및품목		보 증 성 분 량			기타의 규 격 (년,간, 분)	생산능력 (년,간, 분)	허 가 년월일	변 경 허 가 년월일
		유 효 성 분 량		유해성분량(%)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아미노산 부산비료 (액)	좌와같음	질소전량 : 4 가리전량 : 1	좌와같음		열분도 10% 이하	120,000	1978. 1.23	
아미노산 부산비료 (액)	좌와같음					540,000	1982. 10.22	
제 3종 복합비료 10-0-2	좌와같음	질소전량 : 10 가리전량 : 2 유기물 : 10	좌와같음	질소, 인산, 가 리, 각각의 최 대주성분량의 합계량의 함유 율 1%에 대 하여	유리 황산 0.5 % 이하	45,000	1983. 2.16	

비료의종류및품목		보 증 성 분 량			기타의 구 격 (%)	생산능력 (년산, 톤)	위 가 년월일	변 년월일
변경전	변경후	유 효 성 분 량		유해성분량(%)				
		변경전(%)	변경후(%)					
				황정산화물 : 0.025 비 소 : 0.005 아질산 : 0.02 뷰렛태질소 : 0.01 설과민산 : 0.005				
제 3 중 복합비료 10-6-8	제 3 중 복합비료 (감글용, 원예 추비용)	질소전량 : 10 가리전량 : 8 수용성분소 : 0.3 유기물 : 10	질소전량 : 10 가리전량 : 8 수용성분소 : 0.3 유기물 : 10 구용성고토 : 2	귀와갈음	귀와갈음	45,000	1982. 12.1	1986. 7.21
제 3 중 복합비료 10-9-8	제 3 중 복합비료 10-8-8	질소전량 : 10 인산전량 : 8 가리전량 : 3	질소전량 : 10 인산전량 : 8 가리전량 : 3	1. 질소, 인산 가리, 각각의 최대 조성분량 의 합계 량의 합계율 1% 에 대하여	위와갈음	45,000	1983. 2.16	-

비료의 종류 및 품목		보 증 성 분 량			기타의 규격 (%)	생산능력 (년간, 톤)	허가 년월일	변경 허가 년월일
변경전	변경후	유 효 성 분 량		유해성분량(%)				
		변경전(%)	변경후(%)					
	(원예, 감자, 옥수수용)	수용성붕소: 0.3	수용성붕소: 0.3	황청산화물: 0.025 비소: 0.005 아질산: 0.02 뷰렛태질소: 0.01 실과인산: 0.005 2. 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늄: 0.00018				
제 3종 복합비료 10-10-10	제 3종 복합비료 10-10-10 (사과, 복숭아, 과수용)	질소전량: 10 인산전량: 10 가리전량: 10 수용성붕소: 0.3 유기물: 10	질소전량: 10 인산전량: 10 가리전량: 10 수용성붕소: 0.3 유기물: 10 구용성고토: 2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5,000	1983. 12.24	1986. 7.21

비료의 종류 및 품목		보 증 성 분 량			기타의 규 격 (%)	생산능력 (년간톤)	위 가 년월일	변 경 년월일
변경전	변경후	유효성분량		유해성분량(%)				
		변경전(%)	변경후(%)					
제 5 중 복합비료 10-12-10	제 3 중 복합비료 10-12-10 (교추, 갑 자, 원예, 일반작물 용)	질소전량 : 10	질소전량 : 10	위와같음	유리황 산 0.5 %이하	45,000	1983	1986 12.24 7.21
		인산전량 : 12 가리전량 : 10 수용성붕소 : 0.3 유기물 : 10	인산전량 : 12 가리전량 : 10 수용성붕소 : 0.3 유기물 : 10 구용성고토 : 2					
제 3 중 복합비료 9-14-12	제 3 중 복합비료 9-14-12 (마늘, 양 파, 호프 용)	질소전량 : 9	질소전량 : 9	위와같음	위와 같음	45,000	1983	12.24
		인산전량 : 14 가리전량 : 12 수용성붕소 : 0.3 유기물 : 10	인산전량 : 14 가리전량 : 12 수용성붕소 : 0.3 유기물 : 10 구용성고토 : 1					
제 3 중 복합비료 10-13 -8	제 3 중 복합비료 10-13 -8	질소전량 : 10	질소전량 : 10	위와같음	위와 같음	45,000	1984	7.24
		인산전량 : 13	인산전량 : 13					

비료의 종류 및 품목		보 증 성 분 량		기타의 규 격 (%)	생산능력 (년간톤)	허 가 년월일	변 경 가 년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유 효 성 분 량						유해성분량(%)
		변경 전(%)	변경 후(%)					
(감골용 특호)	(감골순 비용, 원 예용)	가리전량 : 8 수용성붕소 : 0.3 유기물 : 10	가리전량 : 8 수용성붕소 : 0.3 유기물 : 10 구용성고토 : 2					
제3종 복합비료 10-4-6 (상전용)	제3종 복합비료 10-4-6 (상전용, 치나무용)	질소전량 : 10 인산전량 : 4 가리전량 : 6 수용성붕소 : 0.3 유기물 : 10	질소전량 : 10 인산전량 : 4 가리전량 : 6 수용성붕소 : 0.3 유기물 : 10 구용성고토 : 2	위와같음	유리화 산 0.5 %이하	45,000	1984 7.24	1986 7.21
제3종 복합비료 8-15-7 (초지 조성용)	제3종 복합비료 8-15-7 (초지 조성용)	질소전량 : 8 인산전량 : 15 가리전량 : 7 유기물 : 10	질소전량 : 8 인산전량 : 15 가리전량 : 7 유기물 : 10 수용성붕소 : 0.2 구용성고토 : 3	위와같음	위와 같음	45,000	1984 11.15	

비료의 종류 및 품목		보 증 성 분 량				기타의 규격 (%)	생산능력 (년산톤)	회 가 년월일	변 각 년월일
변경전	변경후	유 효 성 분 량		유해성분량(%)					
		변경전 (%)	변경후 (%)						
제 3 종 복합비료 12-7-9 (초지 관리용)	제 3 종 복합비료 12-7-9 (초지 관리용)	질소전량 : 12 인산전량 : 7 가리전량 : 10 유기물 : 10	질소전량 : 12 인산전량 : 7 가리전량 : 9 유기물 : 10 수용성붕소 : 0.2 구용성고토 : 3	위와 같음	유리화 산 0.5 %이하	45,000	1984 11.15	1986 7.21	
제 3 종 복합비료 12-0-13 (수비용)	과와 같음	질소전량 : 12 가리전량 : 12 유기물 : 10	과와 같음	질소, 인산, 가 리 각각의 최 대 주성분량의 합계량의 잔유 율 10%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 0.025 비소 : 0.005 아질산 : 0.02 퓨렛태질소 : 0.01 실과민삼 : 0.005	위와 같음	45,000	1984 11.15		

비료의 종류 및 품목		보충 성분 량			기타의 규격	생산능력 (년간, 문)	허가 년월일	변경 년월일
변경전	변경후	유효성 변경전(%)	보충 변경후(%)	유해성분량(%)				
제 3 종 복합비료 8-12-12 (팜기, 방공용)	제 3 종 복합비료 8-12-12 (팜기, 방공용)	질소전량: 8 인산전량: 12 가리전량: 12 유기물: 10	질소전량: 8 인산전량: 12 가리전량: 12 유기물: 10 수용성붕소: 0.3 구용성고토: 2	1. 질소, 인산 가리, 자자의 최대주성분량 의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황철산화물: 0.025 비소: 0.005 아질산: 0.02 부텃태질소: 0.01 실과민산: 0.005 2. 가용성 인 산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늄: 0.00018	위 외 갈 음	45,000	1985. 8.8	1986. 7.21
제 3 종 복합비료	제 3 종 복합비료	질소전량: 8 인산전량: 5	질소전량: 8 인산전량: 5					

비료의종류및품목		보 증 성 분 량			기타의 규 격 (%)	생산농리 (년감 돈)	허 가 년월일	변 경 년월일
변경전	변경후	유 효 성 분 량		유해성분량(%)				
		변경전(%)	변경후(%)					
8-5-6 (비닐하 우스용)	8-5-6 (하우스 용, 유채 용)	가리전량 : 6 유기물 : 10	가리전량 : 6 유기물 : 10 수용성붕소 : 0.3 구용성고토 : 2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5,000	1985.	1986. 8.8
제 3 중 복합비료 9-12-8 (포도기 비용)	제 3 중 복합비료 9-12-8 (포도기 비용, 맥주맥 용)	질소전량 : 9 인산전량 : 12 가리전량 : 8 유기물 : 10	질소전량 : 9 인산전량 : 12 가리전량 : 8 유기물 : 10 수용성붕소 : : 0.3 구용성고토 : : 2					
제 3 중 복합비료 6-4-3 (참깨 용)	제 3 중 복합비료 6-4-3 (참깨용 화초용)	질소전량 : 6 인산전량 : 4 가리전량 : 3 유기물 : 10	질소전량 : 6 인산전량 : 4 가리전량 : 3 유기물 : 10					

미료의종류및품목		보 증 성 분 량			기타의 규격 (%)	생산능력 (년간, 톤)	허가 년월일	변경 허가 년월일
변경전	변경후	유 효 성 분 량		유해성분량(%)				
		변경전(%)	변경후(%)					
				수용성붕소: 0.3 구용성고토: 2				
제 3 종 복합비료 8-8-8 (박나 무용)	제 3 종 복합비료 8-8-8 (박나무 용, 조경 용, 잔디 용)	질소전량: 8 인산전량: 8 가리전량: 8 유기물: 10	질소전량: 8 인산전량: 8 가리전량: 8 유기물: 10 수용성붕소: 0.3 구용성고토: 2	위 적 같 음	위 과 같 음	45,000	1985. 8.8	1986. 7.21
제 3 종 복합비료 8-3-16 (박나나, 과인애 물용)	제 3 종 복합비료 8-3-16 (박나나, 과인애 물용)	질소전량: 8 인산전량: 3 가리전량: 16 유기물: 10	질소전량: 8 인산전량: 3 가리전량: 16 유기물: 10 수용성붕소: 0.3 구용성고토: 2				1985. 12.3	

비료의종류및종목		보 증 성 분 량			가리 유 분 량	생산능력 (년합, 톤)	허 가 년월일	연 가 년월일
변경전	변경후	유효성분 변경전(%)	유효성분 변경후(%)	유해성분량(%)				
제 3 종 복합비료 7-5-14 (연초용)	제 3 종 복합비료 7-5-14 (연초용) 고구마 (용)	질소전량 : 7	질소전량 : 7		위와 같음.	45,000	1985.	1986.
		인산전량 : 5	인산전량 : 5					
		가리전량 : 14	가리전량 : 14				12.3	7.21
		유기물 : 10	유기물 : 10					
		수용성붕소 : 0.3	수용성붕소 : 0.3					
		구용성고토 : 2	구용성고토 : 2					
분사비료	과와 같음	수용성붕소 : 30	과와 같음.			1,500	1985.	
							12.3	
제 3 종 복합비료 6-14-12 (평콩용)	제 3 종 복합비료 6-14-12 (평콩용) 수도모판 (용)	질소전량 : 6	질소전량 : 6	1. 질소, 인산 가리 각각의 최대주성분량 의 합계량의 하	0.5%	45,000	1986.	1986.
		인산전량 : 14	인산전량 : 14					
		가리전량 : 12	가리전량 : 12	합유율 1%			3.20	7.21
		유기물: 10	유기물: 10	에 대하여				
				황철산화물 : 0.025				
				비 소: 0.005				
				구용성고토 : 3	아질산: 0.02			

비료의종류및품목		비 중 성 분 량			기타의 규 격 (%)	생산능력 (년건 본)	허 가 년월일	경 가 년월일
변경전	변경후	유 효 성 분 량		유해성분량(%)				
		변경전(%)	변경후(%)					
				뷰렛태질스 : 0.01 설파민산 : 0.005 2. 가정용 인산합유물 1%에대하여 카드늄 : 0.00018				
제 3 중 복합비료 12-11-10 (일반 작물용)	제 3 중 복합비료 12-11-10 (일반작 물용)	질소전량 : 12 인산전량 : 11 가리전량 : 10 유기물 : 10	질소전량 : 12 인산전량 : 11 가리전량 : 10 유기물 : 10 수용성방소 : 0.3 구용성고토 : 2	위와같음	위와 같음	45,000	1986. 3.20	1986. 7.21
혼합유기 질 비료 4-2-1 (인삼용)	질소전량 : 4 인산전량 : 2 가리전량 : 1	질소전량 : 4 인산전량 : 2 가리전량 : 1	위와같음.			9,000	1986. 3.20	

비료생산업 품목추가허가내역					
비료의 종류 및 품 목	보 증 성 분 량		기타의 성분 (%)	생산능력 (년산 톤)	허 가 년월일
	유효성분량(%)	유해성분량(%)			
제3종복합비료 13-11-12 (과수, 원예 일반작물용)	질소 전량 : 13 인산 전량 : 11 가리 전량 : 12 유 기 물 : 10 수용성붕소 : 0.3 구용성고토 : 2	1. 질소, 인산, 가리, 각각의 최대추성분량 의 합계량의 함유율 1%에 대하여 · 황청산화물 : 0.025 · 비 소 : 0.005 · 아 질 산 : 0.02 · 부헛대질소 : 0.01 · 실 파 민 산 : 0.005 2. 가용성인산 함유율 1%에 대하여 · 카 드 놀 : 0.00018	유리화산 : 0.5 이 하	45,000	1986. 7.21
제3종복합비료 12-13-11 (과수, 원예 일반작물용)	질소 전량 : 12 인산 전량 : 13 가리 전량 : 11 유 기 물 : 10 수용성붕소 : 0.3 구용성고토 : 2	위 와 같 음	위 와 같 음	45,000	.
유기질비료 (채종유, 박)	질소 전량 : 4 인산 전량 : 1 가리 전량 : 1			300	.
유기질비료 (혼합유, 박)	질소 전량 : 3 인산 전량 : 3 가리 전량 : 1			300	.

사 령

1986년 7월 25일

령 재 316 호

성명	발령부서	호봉	직급
양경규	환경과	2호봉	지방환경기사보시보
하병문	영동포구	"	"
권철문	"	3호봉	"
황오주	성동구	2호봉	"
김원영	동대문구	"	"
정훈모	환경과	1호봉	"
강중재	강남구	2호봉	"
박경옥	중구	1호봉	"
서정식	용산구	2호봉	"
신현식	은평구	"	"
최홍익	구로로	"	"
가길현	가정대문구	1호봉	"
이종규	서대문구	2호봉	"
이춘근	도봉구	1호봉	"
신동문	구로로	2호봉	"
구영기	구로로	"	"
공성환	마포구	"	"
원찬희	관악구	1호봉	"
임병욱	성북구	2호봉	"
박용민	성동구	"	"
이노성	종로구	"	"
송윤락	강동구	"	"
최동원	강서구	"	"
오새영	도봉구	"	지방기계기사보시보
권오식	종합공달처리사업소	"	"
장병문	중로구	"	"

성명	발령사항	호봉	직급
임정규	용산구	2호봉	지방기계기사보시보
강병수	성동구	"	"
박용모	강남구	"	지방전기기사보시보
조종호	강서구	"	"
김덕현	마포구	"	"
김영재	서대문구	"	"
이종진	종합중달처리사업소	"	지방기계기원보시보
고춘기	동작구	3호봉	"
송병호	은평구	3호봉	"
소임석	암사수원지사무소	2호봉	"
최귀식	강남구	3호봉	"
직기	관악구	2호봉	"
이병준	마포구	3호봉	"
김효준	종합중달처리사업소	"	지방전기기원보시보
정경수	팔당수원지사무소	"	"
남태덕	동대문구	4호봉	"
김중채	성북구	3호봉	"
서태창	동작구	"	"
양영민	노량진수원지사무소	5호봉	"
김찬기	영등포구	4호봉	지방기계기사보
박우동	구로구	3호봉	지방전기기사보
이정화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	"
유태호	성북구	"	지방토목기사보시보
이익범	동대문구	"	"
구회욱	강남구	2호봉	"
국중진	동대문구	3호봉	"
황희필	용산구	"	"
안성균	서대문구	6호봉	"
최석용	서영포구	3호봉	"
이병선	동작구	4호봉	"

성명	발령사항	호봉	지급
이우선	도봉구	3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
정명근	강남구	"	"
이병운	서대문구	4호봉	지방토목기원보
이상복	성북구	3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
박현동	관악구	"	"
박철균	용산구	"	"
최병인	성북구	"	"
김호익	강동구	"	"
심상운	은평구	"	"
이홍식	관악구	4호봉	"
강종구	동대문구	3호봉	"
이순광	강서구	"	"
김동우	은평구	"	"
박창규	동작구	"	"
박중섭	동강동	"	"
박광균	동대문구	"	"
김삼식	동대문구	"	지방건축기원보시보
배기홍	영등포구	"	"

1986년 7월 21일

령 제 317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위	직급
서동기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2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6.7.21-86.10.20 까지 내무국 대기근무)	중구	총무국장	서기관

령 제 318 호

성명	발령부서	직위	현부서	직위	직급
임경선	중구	총무국장	업무과장		서기관
김영준	업무과장	직무대리	성동구	총무국장	"

성명	발령부서	직위	원부서	직위	직급
이재완	성동구	총무국장	상공과장		서기
김두기	상공과장	직무대리	공무원교육원	교과과장	지방서기
장정식	공무원교육원	교과과장	부자관리담당관		
이정규	동작구 총무국장	직무대리	동작구	재무국장	
이현달	동작구 재무국장		관재과장		서기
이성준	관재과장		동작구	총무국장	
반상균	구로구	재무국장	은평구	사무국장	서기
문자현	은평구		구로구	시민국장	
장영순	강남구	시민국장	영등포구		
이주인	영등포구		동작구		
영재 319호					
성명	발령부서	직위	원부서	직위	직급
문인홍	총로구	보건소장	은평구	보건소장	지방의사
김병희	중구		영등포구		
맹시선	영등포구		성북구		
권정숙	동작구		강남구		
김성식	관악구		강서구		
손경신	강남구		동작구		
박노진	성북구		동대문구	보건지도과장	
양일연	강서구		은평구		
1986년 7월 19일자 영재 319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민광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86.2.24 자 3월간 감봉 처분을 동일자로 전제"으로 변경 처분함		강동구	지방보육교사	

1986년 7월 21일자				명제 32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용선	대책본부 결임 근무물 명함. ('86.7.21 - 행사종료시까지)	내무국	지방서기관		
1986년 7월 22일자				명제 322호	
성명	발령부서	현부서	직급		
이훈구	동작구	청소과	지방행정주사		
김태홍	서울시립대학	녹지과			
박진구	종합건설본부	영등포구	지방전기기사		
한승혁	성북구	서울시립대학	지방행정서기		
김재웅	도봉구	종합종말처리사업소			
1986년 7월 8일자				명제 32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전태수	부직물 명함	내무국	지방건축기정		
1986년 7월 22일자				명제호 32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재열	시립운동장 파견 근무물 명함. ('86.7.23 - '86.10.31)	구로구	지방농림기원		
1986년 7월 23일자				명제 325호	
성명	발령부서	직위	현부서	직위	직급
안승일	무자관리담당관	무자실사2계장	도봉구	새마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분규	종합건설본부		내무국		
임철현	강남구		구로구		
유승문	구로구		아동병원	서무과장	
양주혁	동부병원	서무과장	주백기회과	주택계획계장	

성명	발령부서	직 위	원부서	직 위	직 급
이상운	종로구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최영복	사회지도담당관	사회정화 2 계장	.	.	.
이윤덕	도봉구		강동구		지방행정주사
최중선	은평구		도봉구		.
정신남	구로구		청소년사업관		.
권영규	내무국		무과관리담당관	무과장 2 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훈경	정신병원	사무과장	은평구	환경과장	.
이주호	은평구		정신병원	사무과장	.
백준기	영등포병원	.	강서구	관청과장	.
조규필	강서구		영등포병원	사무과장	.
이원점	아동병원	사무과장	보건환경연구소	.	.
강신일	보건환경연구소	.	동부병원	.	.
정재택	서대문병원	.	강남구	환경과장	.
민웅익	내무국		서대문병원	사무과장	.
추교신	주택기획과	주택계획계장	구로구	주택과장	.
손시익	강남구		사회지도담당관	사회정화 2 계장	.
박광부	구로구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
령 제 326 호					
조광치	급수과	배수계장	급수과	급수장치계장	지방토목기과
심재영	.	부수방지계장	구획정리과	환지 2 계장	.
이연배	.	급수장치계장	내무국	.	.
주봉현	구획정리과	환지 2 계장	.	.	.
김영걸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계장	.	.	.
민성기	종합건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계장	.
손기환	도봉구		건설자재사업소	소장	.
남궁락	남부건설사업소	소장	주택개발과	개발 1 계장	.

성명	발령부서	직위	원부서	직위	직급
김종권	주택개발과	개항1계장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과
이원진	용산구		내무국		"
권석원	성북구		"		"
조명환	내무국		급수과	누수방지계장	"
신동문	남부수도관리사업소	소장	강서구	도시정비과장	"
김석기	강서구		종합건설본부		"
한재호	건설자재사업소	소장	도봉구	토목과장	"
조근호	은평구		내무국		"
명계 327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경수	종합건설본부 근무		내무국	지방건축기과	
김종삼	중구		서대문구	"	
박석안	서대문구		종합건설본부	"	
최용호	한강관리사업소준비단 파견근무 ('86.7.23 - 별도지시 시까지)		내무국	지방농림기과	
이출희	공원과 파견근무 ('86.7.23 - '86.12.31)			"	
명계 329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정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지방별정직 8급상당	
김명구			종합종말처리 사업소	"	
1986년 7월 25 일자 명계 330 호					
성명	발령부서	직위(호봉)	직급	비고	
홍연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전산처리사(1호봉)	지방별정직 8급상당	신규	
모상식	종합종말처리사업소	공해측정기사(1호봉)	"	"	
1986년 7월 24 일자 명계 331 호					
성명	발령부서		원부서	직급	
이양섭	종합종말처리사업소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1986년 7월 35일		령 제 332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위	직급
박신길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2.3호의 규정에 의거 해임에 처함.	관악구		지방토목기사
김제철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	"	"
김광식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2 호의 규정에 의거 부직을 명함.	"		지방토목기사보
임영준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2.3호의 규정에 의거 과년에 처함.	"		지방토목기원
강동인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		"
이문영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2 호의 규정에 의거 1월간 감봉에 처함.	"		지방조 절 수
이시유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용산구		지방토목기원보
		령 제 333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위	직급
이윤택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제 1인사 위원회 의결 사항	관악구	건설국장	지방토목기정
노태윤	부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2,3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내무국		지방토목기좌
서울특별시청				